

[별표 4]

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(제13조 관련)

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정보보호,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

- 가. "동등학력"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,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한다.
- 나. "정보기술 경력"이란 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, 정보통신기기,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·분석·설계·개발·운영·유지보수·컨설팅·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.
- 다. "정보보호 경력"이란 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, 시스템·네트워크 보호, 응용서비스 보호, 계획·분석·설계·개발·운영·유지보수·컨설팅·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.
- 라. "개인정보보호 경력"이란 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, 개인정보보호 컨설팅,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.
- 마.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.
- 바.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,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.
- 사. 아래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<경력인정 요건-중복 인정 불가>

구 분	경력 인정 요건	인정기간
정보보호 경력	o “정보보호”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	2년
	o “정보보호”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	1년
	o 정보보안기사	
	o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(ISACA)의 정보시스템감사사(CISA)	
	o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(ISC²)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(CISSP)	
개인정보보호 경력	o “개인정보보호”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	2년
	o “개인정보보호”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	1년
	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	
	o 개인정보관리사(CPPG)	
정보기술 경력	o “정보기술”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	2년
	o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	
	o 정보시스템감리사	
	o “정보기술”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	1년
	o 정보시스템감리원	
	o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	